

의안 번호	제3729호
----------	--------

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0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은 특수한 전문성 및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옥외 광고물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 수행 위탁 필요
- 위탁을 통해 안전점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의 질적 향상 및 행정 신뢰 구축

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범위

* 안전점검 기준 (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)
○ 옥외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
○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·사용자재·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
○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등

- 안전점검 수수료 : 광고물의 종류·면적·형태에 따라 산정

(※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4 기준)
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 (3년)

○ 위탁자의 의무

- 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
-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을때 그 사실을 즉시 보고 (단, 현장에서 보완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제외)
- 기타 위탁받을 자의 의무는 별도 협약서에서 정함

○ 현 수탁기관 : 경기도옥외광고협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